

의안번호	제 호
의 연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

2016년도 세출예산

(재)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

제 출 자	구미시장
제출연월일	2015년 월 일

2016년도 세출예산 (재)구미시장학재단

출연 계획 동의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15. 11. .

제 안 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2016년도 세출예산 (재)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
 - 출연 예정액 : 금700,000천원
 - 출연 필요성
 - 지역우수인재 육성과 명문학교 육성지원으로 구미교육발전 기여
 -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출신 수도권 진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여건 조성
 - 출연근거법령 :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(기금 출연) 및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(사업)

3. 출연안 : 별첨

4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5. 관련법령 :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□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

출자·출연 예정액	○ 금550,000천원 ('15년 550,000천원) • 대구은행('14~'16년) : 4억 × 3년 = 12억 • 농협('15~16년) : 1.5억 × 2년 = 3억
출자·출연 기관	○ 기관명 : (재)구미시장학재단 ○ 대표 : 남유진 ○ 소재지 :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
사업내용	
출자·출연 필요성	○ 지역우수인재 육성과 명문학교 육성지원으로 구미교육발전 기여 ○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명품도시로서의 도약기반 마련
사업개요	○ 사업기간 : 2008.08.04. ~ 법인 청산시점 ○ 사업장소 : 구미시 송정대로 55 (재)구미시장학재단 ○ 소요예산 : 550,000천원(시출연금 550,000천원) ○ 장학사업 • 고등학생 : 진학우수/성적우수/고교특기 장학금 지급 • 대학생 : 진학우수/성적우수/기회균등/예체능특기 장학금 지급 ○ 기타 구미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사업
근거·법령	○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(기금 출연) ○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금고 지정 평가기준) 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 ○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(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) 1.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『지방재정법』 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검토의견	○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유출 방지, 명품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 필요
소관부서	○ 총무과장 : 조 석 희 (480-6750)

□ 구미학숙 운영 지원

출자·출연 예정액	금150,000천원 ('15년 150,000천원)
출자·출연 기관	○ 기 관 명 : (재)구미시장학재단 ○ 대 표 : 남유진 ○ 소 재 지 :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
사 업 내 용	
출자·출연 필요성	○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출신 수도권 진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여건 조성 ○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우수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
사업개요	○ 예산지원액 : 150백만원 ※ 연간 운영비 : 300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제세공과금 등) - 자체 재원 : 150백만원(입사생 수입 120, 임대료 수입 30) - 시비 지원 : 150백만원 ○ 운영인력 : 6명(관리사무소장, 사무원, 사감 3, 주방조리원 1)
근거·법령	○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(기금 출연) ○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(사업)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 1. 우수학생 인재육성 장학사업 2.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.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검토의견	○ 구미학숙 운영비 부족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학숙 운영을 도모하고 입사생 편익을 개선을 통한 최적의 학숙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
소관부서	○ 총무과장 : 조 석 희 (480-6750)

□ (재)구미시장학재단 일반 현황

①기관명(주소) :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(주소)(구미시 송정대로 55(송정동))			
②기관소개	○ 우수인재 육성과 명문학교 육성 지원으로 구미교육 발전 기여 ○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 명품도시로 도약 기반 마련		
③설립근거	○ 법 률 : 민법 제32조,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○ 조 례 :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		
④연 혁	○ 설립일자 : 2008.08.04	⑤관계기관	○ 경상북도교육청
⑥주요기능	○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원사업 ○ 지역 인재 육성·지원사업 ○ 서울학숙 건립 및 지원사업 ○ 명문학교 설립 지원사업 ○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		
⑦기관장 소 개	○ 이사장 : 남유진 ○ 2006. 07. 01 ~ 2014. 09. 21 현재 구미시장		
⑧조 직 기구도	<pre> graph TD A[이 사 회] --- B[이사장] B --- C[이 사] B --- D[감 사] C --- E[기금조성 추진위원회] C --- F[사 무 국] F --- G[서울구미학숙 관리사무소] </pre>		
⑨공시책임자	○ (공시담당자)(소속) 총무과 (직책·성명) 사 무 원 김동기 (전화) 054)480-6783 ○ (공시담당자)(소속) 총무과 (직책·성명) 사무국장 조석희 (전화) 054)480-6750		

관 계 법 령

○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(기금 출연)

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 안 자	담 당 관	조 석 희
	담 당	김 덕 중
	담 당 자	시 병 연 (480-6782)